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2003. 8. 30.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8월 23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3년 8월 23일
- 다. 상정일자 : 제98회 임시회 제3차위원회 (2003. 8. 30)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채진목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에 이루어질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건

- 신공덕동 3, 5, 9, 10통 등의 일반주택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던 舊덕성경로당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폐쇄되어 상성1차아파트 단지 내로 경로당이 이전되었으나, 일반주택지역 주민들이 경로당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고 아파트 주거민들과 위화감·갈등 등이 있어 2003 동정보고시 주민건의사항 등으로 신공덕동 3, 5, 9, 10통 등의 일반주택지역에 구립 경로당을 빠른 시일 안에 건립하여 70~100명의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

라는 요청이 있어 동 경로당 신축부지를 매입하여 노인복지시설 (경로당)로 활용하고자 함.

○ 자활복지센터 건립부지 매입건

- 우리구 자활복지센터건립 추진계획에 따라 상암동 택지개발지구 제2공구내 부지(복지시설) 743평(2,455㎡) 내외의 자활복지센터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 재산의 표시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단위:천원)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 성명)
	지목	소 재 지	면적(㎡)				
1	계			630,850			
	소 계 (매 입)			271,250			
	대	신공덕동 139-7	63.0	79,443	2003년	경 로 당 부 지 매 입	도화동 412-52 정도기
		신공덕동 139-110	36.0	45,864	2003년		도화동 412-52 정도기
		신공덕동 139-158	76.0	88,445	2003년		신공덕동 139-158 장수식
	건물	신공덕동 139-7	43.0	38,880	2003년	건물매입	도화동 412-52 정도기
		신공덕동 139-158	29.75	18,618	2003년		신공덕동 139-158 장수식
	신축	신공덕동 139-7외 2필지	193.9	359,660	2003년	경 로 당 신 축	성산동 275-3 마포구
2	대	상암동택지개발지구2공구 사회복지시설1구획부지	2,455	3,299,339	2003년	자활복지센터 부 지 매 입	서울특별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건물은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자활복지센터 건립부지와 신공덕동 경로당 부지를 취득하여 신축하고자 제출된 것임.

○ 신공덕동 경로당 신축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동 재산은 마포구 신공덕동 139-7외 2필지 상에 대지면적은 175㎡(약 53坪)이고 지상에는 기존무허가 건물1동(43㎡)과 유허가 건물1동(29:75㎡)의 취득 추정가액은 2억 7,125만원이고, 경로당 신축규모는

지상 2층으로 연면적은 193.9㎡(58.64坪)임.

○ 자활복지센터 건립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동 재산은 상암동 택지개발지구 2공구내 사회복지시설 1구획토지로 면적은 2,455㎡(약 743坪)이고 부지조성원가에 의한 취득 추정가액은 32억 9,933만 9천원(1㎡당 1,343,926원)으로 현재 소유자는 서울특별시가 되겠으며,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에 의하면 자활복지센터의 신축규모는 연면적 6,930㎡(2,100坪)에 지하1층, 지상6층으로서 신축사업은 2004년도에 착공하여 2005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저소득층에게 각종 교육 및 기술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활복지센터는 현재 아현1동에 자활복지시설은 있으나 재개발 예정지구로서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여러 곳에 흩어져 운영되고 있는 자활사업을 한 곳으로 모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한 동 센터를 건립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층에게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복지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는 있으나 막대한 구비가 소요되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부서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유남렬 위원) : 주택재개발지역내에 경노당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체에서 외부에 경노당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 답변요지(조수남 사회복지과장) : 현행법상 단지내 경노당을 매각하고 구에서 외부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질의요지(박지위 위원) : 舊 덕성경노당의 소유자는?

○ 답변요지(조수남 사회복지과장) : 구립으로 대지 20평, 건물 30평임.

○ 질의요지(정형기 위원) : 자활복지센터 부지매입 평당가격은 얼마이며, 시에서 지원은 없는가?

○ 답변요지(조수남 사회복지과장) : 평당 440만원이며, 국 시
비지원은 없음.

○ 질의요지(신봉현 위원장) : 자활복지센터건립 후 지원될 운
영비 등의 경상비 규모는?

○ 답변요지(조수남 사회복지과장) : 사업확정 후 규모를 알수
있으나, 운영비는 국비:시비:구비가 50:25:25로 구성됨.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2003. 8.

제 출 자: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에 이루어질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

2. 주요골자

□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건

- 신공덕동 3, 5, 9, 10통 등의 일반주택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던 舊덕성경로당이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폐쇄되어 삼성1차아파트 단지내로 경로당이 이전되었으나, 일반주택지역 주민들이 경로당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고 아파트 주거민들과 위화감·갈등 등이 있어
- 2003 동정보고시 주민건의사항 등으로 신공덕동 3, 5, 9, 10통 등의 일반주택지역에 구립 경로당을 빠른 시일안에 건립하여 70~100명의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동 경로당 신축부지를 매입하여 노인복지시설(경로당)로 활용하고자 함.

□ 자활복지센터 건립부지 매입건

- 우리구 「자활복지센터건립 추진계획」에 따라 상암동 택지개발지구 제2공구내 부지(복지시설) 743평(2,455㎡) 내외의 자활복지센터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 가액 (단위:천원)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 소, 성 명)
	지목	소재지	면적(㎡)				
	계			630.850	-		
	소계(매입)			271.250			
1	대	신공덕동 139-7	63.0	79,443	2003년	경로당 부지매입	도화동 412-52 정도기
		신공덕동139-110	36.0	45,864	2003년		도화동 412-52 정도기
		신공덕동139-158	76.0	88,445	2003년		신공덕동139-158 장수식
	건물	신공덕동139-7	43.0	38,880	2003년	건물매입	도화동 412-52 정도기
		신공덕동139-158	29.75	18,618	2003년		신공덕동 139-158 장수식
	신축	신공덕동139-7외 2필지	193.9	359,600	2003년	경로당 신축	성산동 275-3 마포구
2	대	상암동택지개발지구2공구 사회복지시설(구회토지)	2,455	3,299,339	2003년	자활복지센터 부지매입	서울특별시

3. 근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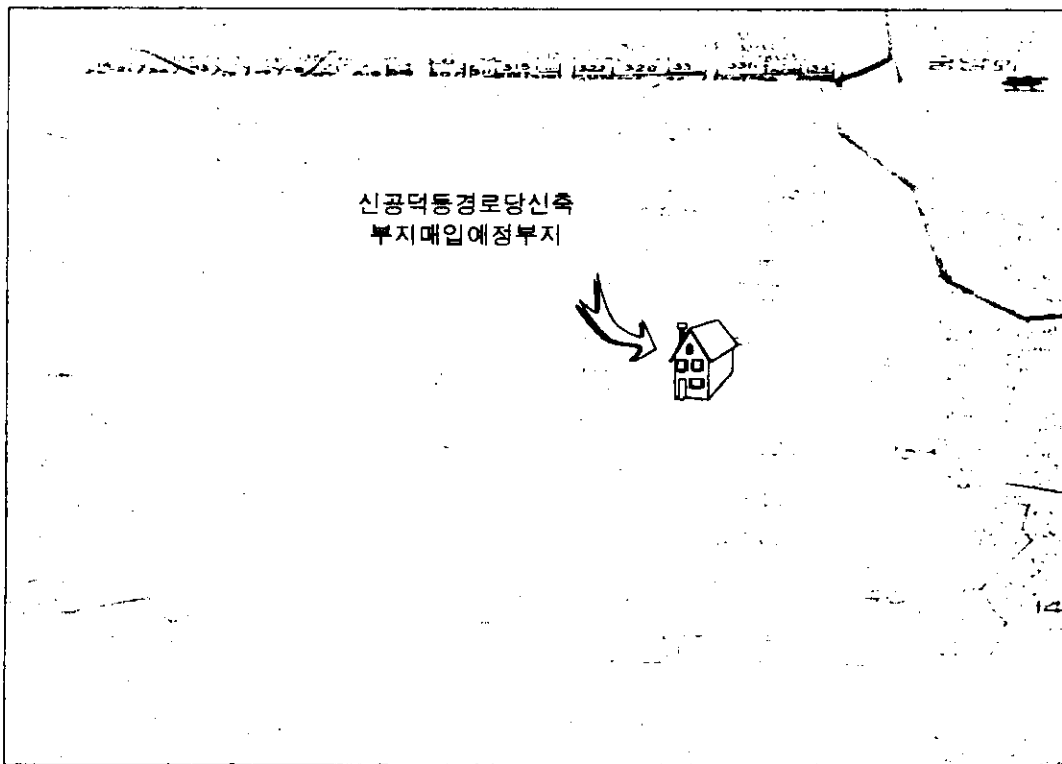
- 지방재정법(개정:2001.1.29,법률:제6400호) 제77조제1항
- 지방자치법(개정:2003.7.18,법률:제6927호) 제35조제1항제6호
-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2003.6.30,대통령령:제18044호) 제84조제2항
-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개정:2003.5.6,조례:제537호) 제36조제1항
-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조례시행규칙(개정:2001.3.31,규칙:제354호) 제29조

신공덕동 경로당신축 부지확보(안)

1. 부지확보 재산현황

구분	위치	지목	면적 (㎡/평)	부지확보조건	소유자	비고
취득	신공덕동139-7	대지	63/19	매입	정도기	
	신공덕동139-110	대지	36/10.9	“	정도기	
	신공덕동139-158	대지	76/23	“	장수식	

2.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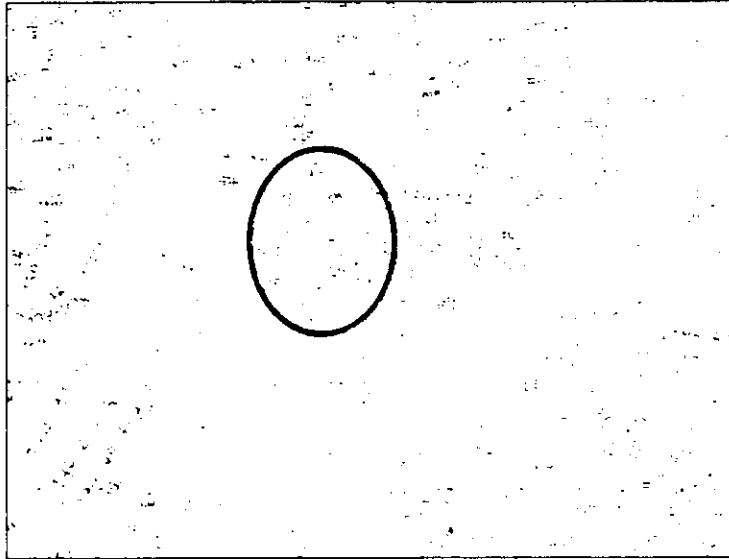


■ 지적현황도 및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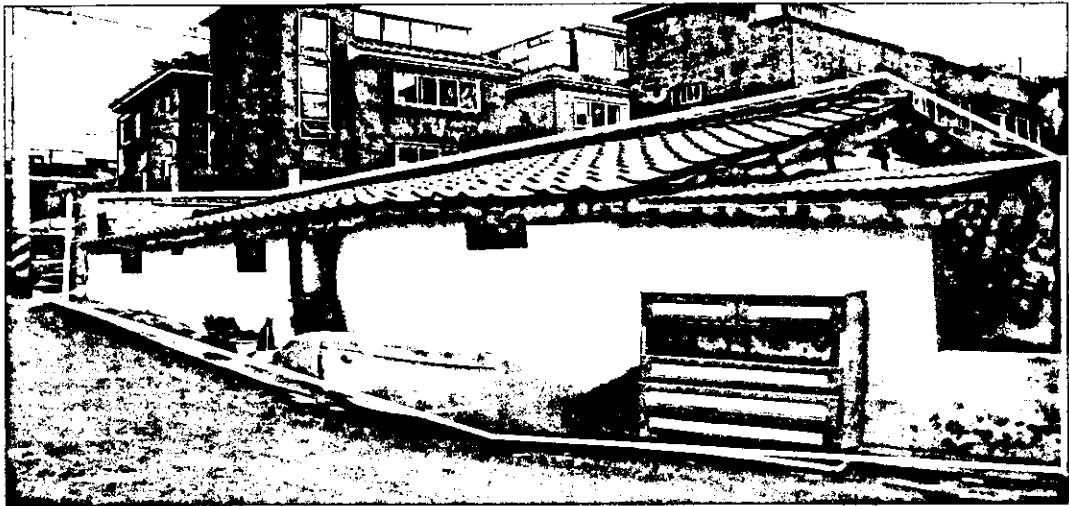
현 황 도

- 대상토지
 - 신공덕동 139 - 7
 - 신공덕동 139 - 110
 - 신공덕동 139 - 158

○ 신축부지



현장사진



자활복지센터 건립 부지확보(案)

1. 부지확보 재산현황

구분	위 치	지목	면적 (㎡ / 평)	부지확보 조건	소유자	비고
취득	상암동택지개발지구 제2공구사회복지시설 1구획 토지	대지	2,455 / 742.6	매입	서울시	

2. 위치도

